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가. 원고(2013. 6. 25. 설립)는 2013. 7. 22.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2016. 10. 25. 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redacted]남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 위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각 경영자가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각 회사는 독립된 별개 법인이고, 주된 생산품이 다르고, 창업 이후에 업종이 동일하게 되었을 뿐이다. 창업시점에서는 두 회사의 본점이 달랐으므로, 이후 동일 주소지로 이전한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창업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기 인력을 공유하여 협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조업 개시는 기존 소외 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C의 남편인 D이 대표이사(51% 지분)로, C이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이고, 원고 회사는 위 C이 대표이사(100% 지분)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의 자회사(100% 지분)이다. 또한 주식회사 E의 감사는 위 D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의 각 측면에서 볼 때, 회사목적은 피이폼(제품포장 및 완충제), 비닐포장제, 에어캡, 플라스틱 필름 제조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 내지 그 확장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외 회사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등이었는데, 2014년 이후로 이들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결과 소외 회사의 거래처는 I, 주식회사 J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회사와 거래하고 결국 소외 회사와는 거래선을 끊었다.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생산품이 동일 · 유사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 입장에서 볼 때,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거래당사자나 신뢰도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원고는 갑 제10, 11, 12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생산품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인격이 다른 원고와 소외 회사가 동일 회사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생산품이나 공정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 4명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회사로 입사하였고,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는 2018. 3. 5. 같은 날짜로 각 본점을 김해시 K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는 인적·물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나타내는바, 원고 회사가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별지

순번	과세물건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 가산세	소 계
1	차량 (L)	2,204,180	683,290	-	-	-	-	2,887,470
2	차량 (M)	2,204,180	780,500	-	-	-	-	2,984,680
3	차량 (N)	665,630	384,460	-	-	-	-	1,050,090
4	차량 (O)	3,566,430	1,360,230	-	-	-	-	4,926,660
5	차량 (P)	3,351,340	1,478,270	-	-	-	-	4,829,610
6	차량 (Q)	3,500,000	1,643,600	-	-	-	-	5,143,600
7	차량 (R)	665,630	399,240	-	-	-	-	1,064,870
8	부동산([redacted] 시 S	95,600,000	61,556,840	4,780,000	2,599,840	9,560,000	5,199,680	179,296,360
	합 계							202,183,340